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25일, 한준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3.30.)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4.30.) 상정,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
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한준호)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의 보급·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녹색건축 시장의 역량과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검증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경험한 사업자의 확산에 따른 자발적 참여환경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개정안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관련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 제27조의2는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성능개선 효과를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의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안 제6조의2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라는 선언적인 취지로 이해되고,

안 제13조의2는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도입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성능개선을 요구하는 현행법 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5조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의 업무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이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의무화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 음.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